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6330 제안연월일: 2024. 12. .

번호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2024. 6.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4. 9. 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박대출의원	2024. 6.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 11. 11.)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김상욱의원	2024. 7. 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 11. 11.)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강선영의원	2024. 8. 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 11. 11.)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권향엽의원	2024. 8.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 11. 11.)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1. 27.)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 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 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 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 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순직유족 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 을 기초로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공무원 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 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 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 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